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
및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0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0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준공예정(2014년 2월)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전수교육관의 위치를 규정하고, 업무 및 기능을 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전수교육관의 운영방법과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전수교육관 본관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, 사용취소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
- 마. 자료의 기탁에 관한 사항과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- 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기능·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, 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무형문화재 보유자 등”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2. “전수교육관”이란 무형문화재의 기능·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 한다.
 - 가. 본관시설 : 기능동, 예능동 및 그 부속시설물
 - 나. 부대시설 : 대강당, 상설전시장, 전통문화체험관, 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물

제3조(위치)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(이하 “전수교육관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일원에 둔다.

제4조(업무 및 기능)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무형문화재 기능·예능을 위해 전수, 전시 및 교육
2.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

3. 무형문화재 기능·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·조사·발굴 및 홍보
4. 무형문화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5.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
6.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)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·예능보유자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개관 및 휴관)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매년 1월 1일, 설날 및 추석연휴
2. 전수교육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날

②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한다.

제7조(본관시설 사용)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본관시설 일부를 설치 목적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게 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·수익토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한다. 이 경우 관리운영 비용은 부담하여야 하며, 관리운영비의 부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8조(본관시설 사용취소 등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받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·수익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또는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
 2. 사용·수익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
 3.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·수익을 받은 경우
 4. 사용·수익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(轉貸)한 경우
 5.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부대시설 등 사용) 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,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4.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

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대시설 사용료) 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용료 면제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- 2.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
- 3. 시장이 주최 · 주관하는 행사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탁)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수·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.

② 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 할 수 있다.

③ 기탁자료 등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전수교육관의 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

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(제10조제2항 관련)

1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 시설명	기준	사용료	비고	
대강당	오전(1시간)	20,000	가.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%를 가산한다. 나.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%로 한다. 다. 1시간 초과 시에는 1시간 사용료로 계산한다. 라. 오전, 오후, 야간 및 전일의 시간 구분은 아래와 같다. - 오 전(08:00~12:00) - 오 후(13:00~17:00) - 야 간(18:00~22:00) - 전 일(08:00~22:00) 마.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.	
	오후(1시간)	30,000		
	야간(1시간)	40,000		
	전 일	200,000		
상설 전시장	1일 평 당	기본료		400
		조 명		100
		난 방		300
		냉 방		300
전통문화 체험관	오전(1시간)	20,000		
	오후(1시간)	25,000		
	야간(1시간)	30,000		
	전 일	150,000		
야외 공연장	오 전	30,000		
	오 후	50,000		
	야 간	70,000		
	전 일	100,000		

2. 부대설비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 시설명	기준	사용료	비고
난 방	1시간	15,000	가. 난 방 : 12월 ~ 3월까지 나. 냉 방 : 6월 ~ 9월까지 ※ 다만, 기온의 급변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시 협의조정 다. 1시간 초과 시에는 기준금액의 20%를 가산한다. 라. 마이크 2대는 기본으로 제공한다. (1대 추가 시 5,000원)
냉 방	1시간	15,000	
음향시설	회	20,000	
조명시설	1시간	20,000	

3. 사용료 반환기준

구 분	환 불 기 준	비 고
1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	- 사용료 전액환급	
2.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	- 사용료 전액환급	
3.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.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	가. 사용료 전액환급 나.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급	※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

개인·기관 단체 명칭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	휴대전화번호	
단체 주소			
행사명			
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			
사용일시	년 월 일 : 부터 년 월 일 : 까지		
사용시설	대강당()상설전시장 ()전통문화체험관 ()야외공연장()		
감면신청사유			

「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명 :

인천광역시장 귀하

관계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

<p>관계법령</p>	<p>○ 「문화재보호법」</p> <p>- 제41조(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)</p> <p>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·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(이하 "기예능"이라 한다)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,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2항·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,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u>.</p>
<p>관련법규 정비대상</p>	<p>"해당사항 없음"</p>
<p>관련자료</p>	<p>"해당사항 없음"</p>

[별지 제1호 서식]

비 용 추 계 서 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세입 :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
- 세출 :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운영비 및 관리비 발생
· 원장 1인, 사무원 2인, 경비 2인, 청소원 2인
- 문화재보호법 제41조(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)

2. 비용 추계결과

- 세출 : 연간 인건비 : 176,171천원, 2014년 관리운영비 : 34,565천원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입 : 평일 기준 연간 산정금액에 운영가동 비율 반영하여 적용
2014년 : 30%, 2015년 : 60%, 2016년 : 70%, 2017년 : 80%, 2018년 : 90%
- 세출 : 연간 예산에 매년 5% 상승률 반영

나. 추계 결과

- 세입 : 2014년 ~ 2018년 5개년 : 1,074,744천원
- 세출 : 2014년 ~ 2018년 5개년 : 1,164,443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

- 국비 및 시비 확보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장 류 치 현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입	부대시설 사용료	97,704	195,408	227,976	260,544	293,112	1,074,744
	소계	97,704	195,408	227,976	260,544	293,112	1,074,744
세출	인건비 및 관리운영비	210,736	221,271	232,335	243,952	256,149	1,164,443
	소계	210,736	221,271	232,335	243,952	256,149	1,164,443
재원 조달		230,000	240,000	250,000	260,000	270,000	1,250,000
국 비		92,000	96,000	100,000	104,000	108,000	500,000
시비	소 계	138,000	144,000	150,000	156,000	162,000	750,000
	일반회계	138,000	144,000	150,000	156,000	162,000	750,000
	특별회계						
	기 금						
군·구비							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